

일반이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6.3.19.)

제2조(조직 및 기능) ① 위원회는 상지학원 법인사무국에 두며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일반이사후보자의 모집에 관한 사항
2. 일반이사후보자 심사기준의 결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
3. 일반이사후보자 추천 배수의 결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
4. 일반이사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검증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(전문 개정 2026.3.19.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. 다만 위촉 당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외한다.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추천 기관에 위원의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이사 3명.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하며, 이사회선출일반이사가 아닌자로 한다.
2. 이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지학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인사로 추천하는 사람 1명
3. 상지대학교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.
4.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5. 상지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(전문 개정 2026.3.19.)

제4조(임기)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추천된 일반이사후보자의 이사 선임이 확정되거나, 정관 제24조의4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여 이사회에서 일반이사를 선임할 때 종료된다. (개정 2026.3.19.)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회 의장은 즉시 제3조 제1항의 각호의 해당 기관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고, 해당 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)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소관 임무를 총괄한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원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전문 개정 2026.3.19.)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간사는 정관 제89조 제1항의 법인사무국 국장으로 한다. (개정 2026.3.19.)

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(개정 2026.3.19.)

③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. 서기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사무국 직원으로 한다. (개정 2026.3.19.)

제8조(일반이사후보자의 자격) ① 일반이사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.

② 일반이사후보자는 상지학원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고, 교육의 공공성, 사회적 책무성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, 학문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
2. 학교법인의 운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사람
3.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
4. 사학비리에 단호하며,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
5. 상지학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역량이 있는 사람
6.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
제9조(일반이사후보자 모집) ① 위원회는 추천방식,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과 공개모집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일반이사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한다. (개정 2026.3.19.)

② 위원회는 추천방식에 의하여 일반이사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상지대학교 및 상지대관령고등학교의 구성원, 이사회 이사, 상지대학교 동문, 지역사회단체, 공공기관, 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 (개정 2026.3.19.)

③ 위원회가 일반이사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(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경우를 포함한

다) 상지대학교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, 모집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일반이사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일반이사후보자 모집에 관한 절차, 응모 또는 추천서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**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 (개정 2026.3.19.)**

제10조(심사원칙) ① 일반이사후보자는 **위원에 대하여** 공정한 심리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**(개정 2026.3.19.)**

② 제1항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의 신청을 받는 위원은 **그 심의·의결에서 배제한다. (개정 2026.3.19.)**

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 **제2항의**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. **(개정 2026.3.19.)**

제11조(심사기준과 방법) ① 위원회는 제8조에서 정하는 일반이사후보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일반이사후보자를 심사한다.

② 위원회는 일반이사후보자를 대상으로 **서류심사를 실시한다.**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**병행할 수 있다. (개정 2026.3.19.)**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일반이사후보자 추천) ① 위원회는 이사장으로부터 일반이사후보자 추천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그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할 경우에 **이사회는** 일반이사후보자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**일반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. (개정 2026.3.19.)**

② 제1항에 따라 **위원회는 추천 요청받은 일반이사후보자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심의하여 추천한다. (개정 2026.3.19.)**

③ 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 선임의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일반이사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별지 서식의 심사의결서에 의하여 일반이사후보자를 추천한다.

⑤ 위원회는 일반이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일반이사후보자가 제출한 서류
2. 일반이사후보자 모집 시 추천자의 추천서
3. 위원회 회의록
4. 일반이사후보자 심사경과 요약서

제13조(회의록의 작성 등)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 3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·장소,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4조(비밀의 유지) 위원회 위원, 간사 및 회의 참관자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행정지원) 이사장과 상지대학교 총장은 위원회가 일반이사후보자 추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6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